

아파트 중도금대출 준비서류 안내

- 준비서류 (모든 서류 필수 제출 - 1 개월내 발급분) ☞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되도록 발급
-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전원이 각각 구비서류 준비하여 방문

구분	내용	
공통서류	① 분양계약서(원본) 및 계약금 영수증,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증여한 경우 증여계약서 ☞ 전매한 경우 매매계약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공동명의 계약자는 공동명의인 포함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 표시(분리세대는 각각 제출) ④ 전세대원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과거 주소 포함)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부 ⑥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인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2개년도) ☞ 단, 현 직장 입사일 기준 2023년 1월 이후 재직시 감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표(입사일~현재) 추가제출(필수) ※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에는 회사직인 날인 필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개년도) 사업자등록증(2024년 개업) + 소득이 없는 경우 A + B 하나씩 준비
	프리랜서	위촉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개년도) 필수 ☞ 단, 현 직장 입사일 기준 2024년 1월 이후 재직시, 추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입사일~현재) 추가 제출(필수) ※ 위촉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에는 회사직인 날인 필수
	연금소득자	연금증서(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연금수급자료 최근 2개년도(통장거래내역확인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해당 기관에서 발급
소득이 없는 경우 (A),(B) 하나씩 준비	A	①세무서 발행 2023년 소득신고없는 사실증명원 또는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퇴직자, 사업자 폐업, 기타)
	B	①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지역세대주만 인정) ②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서(2024년 연말정산용으로 발급) ③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국민연금 납부일 경우)
	*	,
*	()	
010-7585-5057	010-6598-4425	010-5206-7809
010-8586-2133	010-9748-8648	010-4358-8188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반분양 계약자용) 보증료를 할인안내

보증료를 할인 : 계약자의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적용

(1) 사회배려계층: 보증신청인이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각호의 1에 해당 시 보증료 할인하되,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내에서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사회배려 계층 할인대상 (40% 할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2.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3.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4.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5. 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8.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9.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사자 증서, 의사자증으로 의사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사회배려 계층 할인대상 (60% 할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피보증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 10.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2) 모범납세자 : 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또는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자로서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료의 10%를 할인

(3) 전자계약 : 보증신청인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료의 3%를 할인
→ (1),(2),(3)의 보증료 할인을 순차적용

적용대상	확인서류
저소득가구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건강보험증 (배우자 또는 보증신청인의 소득여부 확인용) * 기존인 피보증인의 건강보험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소득확인 서류 추가 징구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발급)
고령자가구/노인부양가구	- 주민등록등본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	-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의사상자	- 의사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 - 의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상자 증서
모범납세자	-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 산업훈장, 산업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에 한함